

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명단안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 소	현 직	주 요 경 력	비 고
1	한수균	60.10.15.	마포구 중동 36-30 연립 114동 4호	시민보건의위원회 위원		
2	이연호	58. 7.13.	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PT 7-1303	삼덕회계법인재직	삼일회계법인근무	
3	염찬엽	62. 1. 5.	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PT 25-110	한솔 세무회계 사무소 운영	안권회계법인근무 안진회계법인근무 신한회계법인근무	
4	김광만	59. 9. 7.	마포구 대흥동 325 -78	김광만세무회계 사무소 운영	안진회계법인근무	94회계년도마포 구결산검사위원 역임
5	이병소	62. 1. 3.	마포구 용강동 39- 1 우석연립 A-101	이병소세무회계 사무소 운영	산동회계법인근무 안전·세화회계 법인근무	94회계년도마포 구결산검사위원 역임

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(안)
심사보고서1996. 5. 11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5월 2일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8회의회(임시회) 제1차위원
회(96.5.11.) 상정, 질의토론,
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문화공보실장 조성대

가. 제출이유

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객원기자·모니터요원을 위촉 홍보물 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일부나마 기여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신문의 제호를 "내고장 마포"라고 함.
- 신문 발행인은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월 1회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신문의 게재내용은 구정·의정소식, 교

양, 문화 등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함
-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광고료의 기준등을 정함.

-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 및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원고료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관수)

○동 제정조례안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자체업무 홍보만을 게재하여 발행하던 반상회보 등을 폐지하고 구민중에서 편집위원과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등을 위촉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, 또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세외확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

○안 제7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,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

○안 제11조에 객원기자에게도 예산의 범